

「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」

2023년도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 공고

강원도와 홍천군은 지방소멸 대응 및 「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사업」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'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·외 수요기업(관)에서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2월 13일
(재)강원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
- (사업추진) 강원도, 홍천군 ※ (전담기관) (재)강원테크노파크
- (사업목적) 산·학·연 협력 R&D를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홍천군 바이오산업 활성화
- (사업내용) 기술발굴·개발, BM기획, 제품화개발, 시제품제작, 성능평가 등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
- (사업예산)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홍천군비 등 총 80억원/4년
※ '23년 ~ '26년까지 4년간, 매년 수혜기업 선정·지원 예정이며, '23년 예산 17억원
- (지원분야) 메디컬허브자원, 차세대 바이오 진단, 바이오 의약품
- (공모방식) 자유공모

2 사업내용

□ 지원내용

- (지원 분야) 메디컬허브자원, 차세대 바이오 진단, 바이오의약
- (지원 조건) 지원을 받은 기업은 반드시 흥천군 관내 기업이전* 및 고용창출** 해야 함

※ (기업이전) 본사, 기업부설연구소, 공장 등 설립 및 창업 등

※ (고용창출) 기업이전을 통해 직접 고용된 인력

- (지원 규모) 단년도 1억원 이내, 다년도 2 ~ 3억원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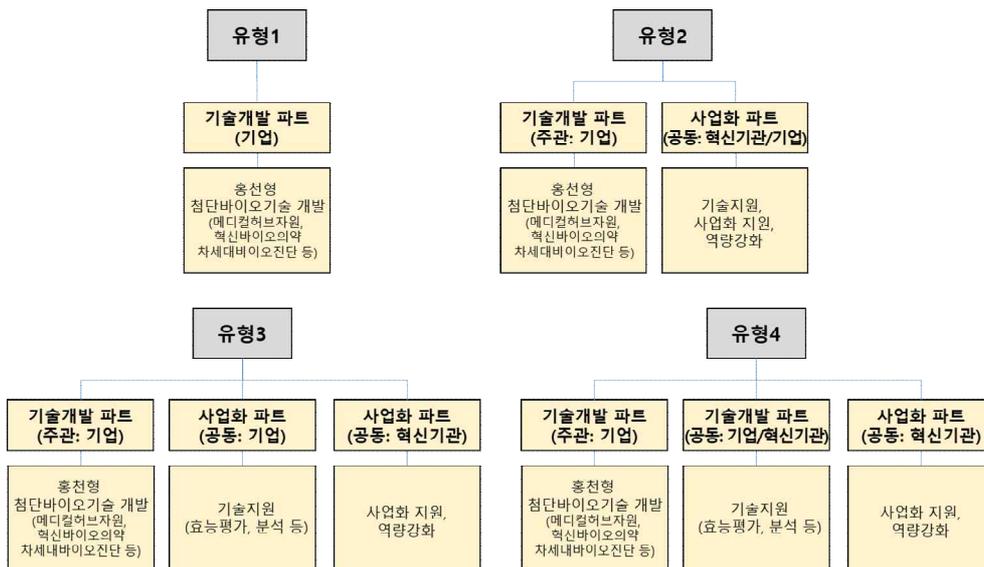
<'23년도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 지원 규모>

구분	지원기간	예산	선정규모	지원분야
단년도	1년	1억원/년	4개 이내	메디컬허브자원, 차세대 바이오진단, 바이오의약
다년도	2년	2억원/년	2개 이내	
	2년	3억원/년	2개 이내	차세대 바이오진단, 바이오의약

※ 지원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□ 추진체계 구성방법

<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 구성 방법>



※ (혁신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컨소시엄 구성시 가능한 강원도 내 혁신기관(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 및 대학)을 활용하되, 불가능할 경우 강원도 외 혁신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, 강원도 외 혁신기관 활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

□ 지원대상 및 자격

○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

주관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원도 홍천군 내, 해당 과제 지원분야 종사 중인 소재기업 및 창업·벤처기업 (예비창업자 포함) - 강원도 홍천군 관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및 창업·벤처기업 (예비창업자 포함)
공동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원도 내·외 산·학·연으로,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,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는 사업화 촉진기관

구 분	유형1	유형2	유형3	유형4
지원 자격	기업	주관연구개발기관 : 기업 및 기관		
		공동연구개발기관 : 기업 및 기관		
추진체계	단독	컨소시엄		
공동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수요에 기초한 사업화를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동시에 강원도내·외 혁신기관 및 컨설팅 기관(업)의 전문서비스를 지원받거나 활용할 수 있음 - (필수조건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역할부여 / 단연도 과제의 경우 선택 - 본 사업의 지원기간 내 홍천군 관내 이전을 해야 하며, 사업계획서 제출시 약속서를 제출해야 함 			

- (예비창업자 기준)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
- ※ 단, 사업공고 전일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※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 폐업 후 3년(부도·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)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→ 벤처기업 : 「벤처기업법」 제2조 → 창업기업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3항에 따른 기업 → 예비창업 :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중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

<기술사업화 촉진기관(예시)>

사업화전문회사	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
BM컨설팅기업	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
기술거래기관	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
기술평가기관	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
기술지주회사	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
시험·인증기관	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
전문생산 기술연구소	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, 전문인력,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
공공기관	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, 전문인력,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
공공연구기관	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) 국·공립 연구기관 2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)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5) 그 밖에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
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	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·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,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

3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

□ 목표·지표 설정 방법

- (R&D 부문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“분야별 기술개발 목표”를 고려하여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

<분야별 기술개발 목표>

분야	기술개발 목표
메디컬허브자원 (기능성 식품·화장품)	TRL6
혁신바이오의약	TRL4
차세대 바이오진단	TRL5

- (비R&D 부문)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R&D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되, 필수지표는 반드시 포함하고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 및 제품의 특성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선택 지표로서 2개 이상 구성

<성과지표별 정의>

연번	성과지표명	지표정의	필수여부
1	시험·평가·인증	- 지원기관의 보유 장비 및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한 시험·평가·인증 지원	필수
2	시제품제작지원	- 지원기관의 보유 장비 및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한 시제품제작 지원	선택
3	기술지도	- 지원기관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통한 기술지도	필수
4	지식재산권 컨설팅	- 지원기관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통한 특허 출원·등록 지원	선택
5	BM 기획 지원	- 환경분석, BM분석, 전략수립 등 지원	필수
6	상품기획	- 디자인, 브랜드 등 개선 지원	선택
7	전시회 참가	- 전시회, 컨퍼런스 등 참가	선택
8	장비교육	-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장비실습 등 포함한 장비운영 전문가 육성 교육	선택
9	기술교류회 운영	- 연구회, 세미나 등 운영	필수

□ 사업비 구성 및 민간부담금

- “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” 및 「코로나-19로 인한 중소기업 R&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1-92호, '21.12.28)」 따라 구성하되, 특별지침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

<간접비 비율 산정>

구분	간접비 구성	
주관연구개발기관	현금	10% 이내
공동연구개발기관	현금	영리기관은 10% 이내, 비영리기관은 5% 이내로 산정

<홍천군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>

유형		지방비 지원비율	민간부담금 비율	민간부담금 구성	
				현금비율	현물비율
주관 연구 개발 기관	예비창업자	80% 이하	20% 이상	해당없음	100%
	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	80% 이하	20% 이상	10% 이상	90% 이하
공동연구개발기관		100% 이하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※ (현물) 창업·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(취득가액의 10%만 계상)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,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

□ 지원 절차 및 일정

구분	수행주체	내용	일정
사업공고	강원TP	• 강원T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공고	'23. 02. 13. ~ 03. 13.
↓			
사업계획서 접수	주관기관·업	• GW RDMS 접수	'23. 02. 13. ~ 03. 13.
↓			
사전검토	강원TP	• 요건 및 제출서류 등 검토	'23. 03. 14. ~ 03. 17.
↓			
선정평가	선정평가 위원회	• 발표평가 및 과제 선정 • 사업비 조정 및 결과 통보	'23. 03. 21. ~ 03. 29.
↓			
협약체결	강원TP 및 주관기관업	• 협약체결, 예산배분 및 과제 수행	'23. 04. 03. ~
↓			
진도관리 및 모니터링	강원TP	• 현장점검 및 실태 조사	사업 기간 중 상시 ※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실시 예정(12월)
↓			
최종평가	평가위원회	• 결과보고서 제출 • 과제 수행 결과 평가	-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① 사전서류검토	② 선정평가	총점
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	발표평가 100점	100점

○ 사전서류검토

-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, 유사·중복성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
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기개발/기지원 여부,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
- (중복성 검토 기준) 판단요소가 동일 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는 중복과제로 판단함

※ 서로 다른 연구주체 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

※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

○ 선정평가

- 해당 분야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'사업계획의 타당성', '사업화 성공 가능성', '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'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(발표평가) 해당 분야 사업 기간 내의 성공 가능성, 사업 기여도, R&BD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함
 - (통과기준)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

※ 발표자료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각 10부씩 기업 구비 필요

- 평가항목

<선정평가항목 및 기준>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평가 착안사항
사업계획의 타당성 (35점)	사전준비성	5	· 관련 규제 및 시장 Needs 조사 여부
	사업화 개발 목표의 타당성	10	· 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· 목표달성 가능성 ·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
	사업화 역량	5	· 대표이사, 총괄책임자의 추진역량 · 장비·시설, 인력 등 인프라 보유 역량
	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	15	·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간 업무분담 적정성 ·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·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· 기 수행 R&D성과의 활용우수성(범부처연계형만 해당)
사업화 성공 가능성 (35점)	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	25	·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, 성장가능성 ·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·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평가 착안사항
			·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· R&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
	시장 진출 가능성	10	· 관련 제품 매출·수출 등 시장 진출 가능성
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(30점)	일자리 창출 효과	20	· 과제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
	산업적 파급 효과	10	· 사업화대상기술 및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 · 수입대체 및 신시장 창출 효과
합계 (100점)			

□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

- 과제 종료(조기 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우수,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게 성과와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-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 종료 후 안내

※ 세부사항은 “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 운영요령” 및 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”에 따름

□ 신청요령

- (신청기간) '23년 02월 13일(월) ~ 03월 13일(월) 18:00까지 온/오프라인 동일
 - ※ 온/오프라인 접수마감일 18:00까지 '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' 접수 불가
- (신청서식 교부) (재)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(<http://www.gwtp.or.kr>) GW RDMS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
- (신청방법) 첨부서류 작성 및 온/오프라인 제출
 - (온라인) 온라인으로 제출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
 - ※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(GW RDMS(<http://rdms.gwtp.or.kr/>))
 - ※ 회원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하므로 가입신청 후 담당자에게 연락
 - (오프라인) 강원대학길1 집현관 4층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 - ※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3월 13일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- ※ 오프라인 제출 시에도 GW RDMS 회원가입 필수

□ 제출서류

연번	서류명	비고
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
2	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	주관연구개발기관
3	사업자등록증	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
4	홍천군 관내 이전 협약서(해당시)	주관연구개발기관
5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
6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
7	이행보증보험증권 (협약완료이후 사업비 지급 전 제출)	주관연구개발기관

○ 온라인 접수 방법 문의처

- (재)강원테크노파크 융복합혁신지원센터 바이오융합팀 (070-4269-3198)

※ 관련 문의 사항은 업무시간(09:00 ~ 18:00) 내 연락 필요

4 기타사항

가. 과제 유의사항

□ 사업비 산정 관련 사항

○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

○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

※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(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, 계속 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,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)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.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

※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)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

※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)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

○ 사업비 편성은 「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 따라 산정

○ 「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 제1장 제15조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따라 인건비,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○ 간접비 산정 시 대학 등 비영리 기관(과기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포함)은 직접비의 5% 이내로 산정하여야 함

※ 직접비(미지급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금액)

- 해당 과제의 지출에서는 모든 종류의 상여금은 지출은 할 수 없으며, 지출 할 시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
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관련 사항

-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(수시, 정기)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, 불응 시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-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성실수행의 판단여부는 연구개발과정, 연구성과, 사업비 관리 및 집행 및 의무사항(최종보고서 미제출 등)·시행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함

※ 관련내용은 「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 제3장 제6절 참고

연구 윤리 확보 관련 사항

-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
보증보험 관련사항

- 강원테크노파크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평가 이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보증보험을 발급받고 제출해야 함

사업비 사용 관련사항

-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과제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,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
나. 지원 제외 대상
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「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 제3장제13조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최종 선정 통보 이후 사업비에 대한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5 법령 및 규정

→ 사업비는 반드시 “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”에 따라 편성하되, 해당 지침에 관련 요령이 없는 경우 “국가연구개발혁신법”, “산업기술혁신산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”, “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” 등에 따름

□ 근거법령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
□ 관련규정

- 강원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
-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
-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
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
-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
-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

※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